

01

계약

7) 계약 파기

질병으로 인한 계약 파기



연주자의 질병으로 인한 계약 파기 시 미리 지불한 항공료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성악가, 가수, 댄서 등 실연자 계약에서는 질병을 불가항력으로 규정하는 예가 있습니다. 불가항력의 의미는 일방에게 계약 위반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지, 일방에게 부당이익을 안기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따라서 정산을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가수가 질병으로 공연장에 올 수 없었다면, 당연히 지급한 공연비는 환불 받아야 하고, 선지급한 경비도 환불받아야 할 것입니다. 공연을 하지 않은 가수에게 부당한 이익이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계약 파기



축제조직위원회입니다. 공연을 위해 출연자가 대기하던 중 갑자기 내리는 우천으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이 염려되어 공연시간 직전에 공연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으로 인해 공연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 현장에서 대기하던 공연팀에게 출연료를 어느 정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어느 쪽에게도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축제사무국의 귀책사유로 공연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출연료 전부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천재지변의 경우 어느 일방에게도 과도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연자가 의상을 갖추고, 교통수단을 이용한 정도의 비용을 평가하여 지불하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전에 천재지변을 대비하여 행사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거나, 천재지변과 관련한 공연 취소와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계약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연자의 경우 기회비용(타 공연 섭외로 벌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점을 염두에 두고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계약 파기



홍수로 인하여 극장의 대관이 불가피하게 되어 대관계약 변경 및 취소를 진행 중입니다. 저희 극장은 대관한 공연단체에게 다른 공연날짜를 제시하여, 변경을 요구했으나 대관한 공연단체 중 한 단체는 공연을 취소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공연 취소에 따른 대관료 환불은 물론 공연에 들어간 제반 비용(홍보물 제작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연 취소 시 보상의 범위와 정도가 궁금합니다.



천재지변에 의한 공연장 사용불능 및 이에 따른 공연 취소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대관계약 상 위험부담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대관계약에서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연장 사용불능의 경우 어떻게 처리하기로 약정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만일 대관계약에서 정한 바가 없다면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되어야 하며, 「민법」은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민법」 제537조) 대관료 중 이미 지급한 금액을 환불하고 대관계약을 해지하면 됩니다. 위와 같이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공연 취소로 인한 상대방의 추가 손해(홍보물 제작비 및 홍보비 등)를 배상할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공연 취소가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로서 극장의 귀책사유가 없어야만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되며, 폭우에 대비한 조치 의무 불이행 등 극장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추가손해의 배상책임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극장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극장이 직접 입증하여야 합니다.

불가항력에 의한 계약 불이행



어린이극을 주로 하는 극단입니다. 4개월 공연을 위해 대관계약을 하고 공연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메르스로 인하여 1개월간 공연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공연이라 한 달 공연을 전면 취소하였는데요. 이럴 때 대관료를 모두 지급해야 하나요? 대관계약서에는 극단의 귀책사유로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 대관료를 100% 지급해야 한다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공연취소는 불가항력에 의한 대관계약의 불이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에 의해 대관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경우에는 극장측과 극단이 협의하여 기 지급한 대관료 중 일부를 극단이 반환 받거나, 앞으로 지급할 대관료 중 일부를 감액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당초 대관계약에서 예정한 '극단의 귀책사유로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되며,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